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. 3. 13 선고 2023가단12849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3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8. 23.부터 2023. 12. 22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기재와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피고에게 2023. 8. 14. 보관된 원금 1억 원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효정

1) 원고는 2024. 3. 11. 청구취지를 110,000,000원(위자료 1,000만 원 청구 포함)에서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고, 100,000,000원으로 감축하였다.